

제3장. 영세율과 면세

부가가치세 영세율 의의

-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“0”인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이 “0”이 되게 하는 제도가 영세율 제도이다.
-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공급의 경우에는 재화·용역의 최종소비자가 공급가액의 10%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나 “0”인 세율을 적용하는 공급의 경우에는 최종소비자가 소비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하는 것이다.
- 세율이 “0”인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것에 하등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 과세사업자가 지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똑같이 지는 것이다. 다만,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일부면제, 세액의 조기환급 등 규정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일 수가 있다.

영세율 제도의 정책적 목적

- ①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: 국가간에 이동이 이루어지는 재화의 수출입은 각 국가에서 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이중과세가 발생되므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재화의 소비지인 수입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.
- ② 수출촉진 :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면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고 당해 수출재화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환급되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대외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. 또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조기환급을 실시하여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다

영세율의 과세부담 제거효과

과세사업자A 생산품 -> 과세사업자B 매입 및 가공-> 영세율사업자 매입 및 가공후 공급

	과세사업자A	과세사업자B	영세율사업자	계
공급	100+10 ①	200+20	300+ 0 ③	600+30
매입	- ②	100+10	200+20	300+30
	100+10	100+10	100+(20) ④	300+ 0

- ① 100 + 10은 공급가액 100과 부가가치세 10을 구분표시한 것임.
- ② 부가가치 생산의 최초단계는 동 생산요소의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함.
- ③ 영세율사업자는 공급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함.
- ④ (20)은 거래징수 당한 세액의 환급임.

- 과세사업자 A, B가 창출한 부가가치 는 각각 100, 100이며, 부가가치세는 각각 10, 10을 거래징수하여 납부 하고 있다.
- 그러나 사업자 B로부터 공급을 받은 영세율사업자는 창출한 부가가치 10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입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20을 환급받게 된다.
- 따라서 사업자 A, B가 거래징수납부한 세액 20이 다시 반환되며 전체적으로 부가가치 총계 30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'0'이 되는 것이다.

=>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 : 영세율 제도는 해당 적용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이미 과세된 것 까지도 모두 취소하는 제도이다.

영세율의 적용대상자

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여야 한다.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매입세액을 환급받지는 못한다.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기 전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.

원칙적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적용되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은 상호면세주의에 의한다.

*상호주의 적용 :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일 경우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.

영세율의 적용대상 거래

- ① 수출하는 재화
-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
- ③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
- ④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
- 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

영세율 적용대상 거래

1) 수출하는 재화

- ① 내국물품(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)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
- ②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, 위탁판매수출, 외국인도수출,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
- ③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: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. 다만, 내국신용장 등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·발급받는 것이어야 한다.
- ④ 한국국제협력단(KOICA) 및 한국국제의료보건의료재단,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(동 기관이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)

2)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: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영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다.

3) 선박,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: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운송하는 것과,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·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.

- ①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
- ②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
- ③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
- ④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

*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.

영세율 적용대상 거래

4)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

①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

② 외국인 외교공관 소속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

③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*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

*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

④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일정한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

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

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,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

⑦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정부 기관(외교공관,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)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

⑧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등

5) 조세 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: 방위산업물자, 도시철도건설용역, 장애인용보장구, 농축산임업, 어업용 기자재 등